

나노소재 및 응용제품지역혁신센터 규정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명칭 및 소재지) 본 센터는 「호서대학교 나노소재 및 응용제품지역혁신센터」 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라 칭하며 호서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내에 둔다.

제 2 조 (설치 목적) 본 센터는 국제화·정보화·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가경쟁력의 향상이 절실히 요구되는 나노소재 및 응용제품의 지역기술 거점을 구축하고 산·학·연 기술자원을 결집하여, 중견·중소기업의 기술 전문화 및 기술혁신 유도과 우량 벤처기업 창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3 조 (사업) 본 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공동 연구 : 산업체 애로기술 해결 및 신기술 개발을 위한 산학 공동연구
2. 교육 훈련 : 전문 분야별 장·단기강좌, 장비 활용교육, 기술지도, 업체 위탁/방문 교육 등
3. 정보 유통 : 첨단 기술 동향/정보의 수집·제공·유통 등
4. 창업 지원 : 창업 보육을 위한 공간·기술·경영 지원 및 신기술 선행 조사 등
5. 장비 활용 : 산·학·연 연계를 통한 공동장비 구입 및 활용 등

제 2 장 조직 및 임원

제 4 조 (조직 및 임원) ① 본 센터는 소장 1인과 4명의 부장을 둔다.

② 소장은 호서대학교 부교수 이상인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5년으로 한다.

③ 센터는 산하에 장비활용부, 정보유통부, 교육 및 인력양성부, 연구개발 및 창업지원부의 4개 부와 실무지원부를 둔다. 또 소장은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부서를 조정할 수 있다.

④ 각 부의 부장은 호서대학교 전임교수 중에서 소장의 추천에 의하여 소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
⑤ 센터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, 자문위원회 및 장비도입 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.

제 5 조 (임원의 직무) ① 소장은 본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의 사업계획의 수립 및 인사, 재정, 관리 등 기타 일체의 운영업무를 총괄하고 센터 설치·운영에 관하여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보고하고, 필요시 본교 총장에게 업무보고를 한다.

② 부장은 소장과 협력하여 별도의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업무를 관장한다.

제 6 조 (직원) ① 본 센터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에 연구 교수, 연구원, 행정직원 및 조교를 둘 수 있으며 소장이 임명한다.

1. 연구 교수는 센터에서 수행하는 산학 공동 연구 및 참여 기업의 애로기술에 대한 지도·자문 등 기술개발 연구에 참여한다.

2. 연구원은 석사 이상의 학력 또는 이와 동등한 경력을 갖춘 자로 한다.

3. 행정직원 및 조교는 학사 이상의 학력 또는 이와 동등한 경력을 갖춘 자로 한다.

② 연구 교수, 연구원, 행정직원 및 조교는 계약직 직원(총장과의 계약직 직원 포함)으로 하고 그 처우에 관한 사항은 소장이 별도로 정한다.

③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본교 규정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 3 장 운 영 위 원 회

제 7 조 (운영위원회) ① 본 센터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운영위원은 센터의 소장 및 부장을 포함한 교내·외 인사 중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소장이 위촉하고,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1/3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소집한다.

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.

1. 센터의 기본사업 및 제반 운영에 관한 심의 및 의사결정
2. 부서 간 업무분담 및 협력사항
3. 자문위원회 및 평가위원회, 장비도입 심의위원회에 대한 후속조치
4. 기타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

제 4 장 자 문 위 원 회

제 8 조 (자문위원회) ① 본 센터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둔다. 자문위원은 센터와 관련한 기관 및 교내의 인사 중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소장이 위촉하고, 회의는 소장이 주관한다.

② 자문위원회는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.

③ 자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센터의 사업 및 제반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문한다.

제 5 장 장 비 도 입 심 의 위 원 회

제 9 조 (장비도입 심의위원회) ① 본 센터 사업 중 고가장비 도입을 사전 심의하기 위하여 장비도입 심의위원회를 둔다. 심의위원은 소장 및 장비활용 부장을 포함한 산·학·연 전문가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소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. 이때 위원 과반수는 산업계 전문가로 구성한다.

② 장비도입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1/3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소집한다.

③ 장비도입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장비도입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.

1. 장비 도입을 위한 수요조사 검토
2. 고가 장비 도입의 심의 및 의결
3. 도입 장비의 변경 심의 및 의결
4. 기타 장비 활용에 관한 사항

제 6 장 재 정

제 10 조 (재원) 본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산업자원부 지역기술혁신센터(TIC) 출연금, 지방자치단체 지원금, 대학 지원금, 참여기관 출연금, 연구사업 수입금, 외부기관으로부터의 찬조 및

기여금,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
제 11조 (회계연도) 본 센터의 회계연도는 당해연도 7월 1일부터 익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.

제 12조 (예산의 운영·관리·결산) 본 센터의 예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하고,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익년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운영·관리는 산업자원부 지역기술혁신센터 설치·운영요령에 따라 시행하고,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년도의 사업보고서와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산업자원부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13조 (감사) 본 센터의 회계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산업자원부가 지정한 전담기관에 회계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14조 (운영규정) 본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3조 각호에 대한 운영규정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운영으로 규정한다.

제 15조 (준용)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자원부 지역기술혁신센터 설치·운영요령과 산업자원부 기술기반조성사업 운영요령 및 평가관리기준을 준용한다.

부 칙

본 규정은 2003년 9월 1일 부터 시행한다.